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2003. 9. 24,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첨참조
4. 검 토 의 견 : 별첨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3년 10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권태환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3년 9월 24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현행 하수도 사용요금은 처리원가의 48.8퍼센트 수준으로 매년 적자액이 증가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유지 관리와 채무상환에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행 하수도 사용요율을 평균 48.52퍼센트 인상 조정함(안 별표 1).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01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총괄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48.8%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48.52% 인상하여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및 재정운용에 걱정을 기하려는 것임.

그간 하수도 사용료는 2001년도 5월에 29.62% 인상하였으나 4단계 하수처리시설(30만톤) 준공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증가,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채무상환액 증가 등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인상하지 못함으로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

지난 7월 23일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하수도 사용요율을 평균 48.52% 인상코자 하는 것은 채무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의 투자재원 확보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다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타 광역시보다 낮고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인상폭이 큼으로서 타 물가에 미치는 물가상승 영향과 시민불만 여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